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현장에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데 현행법령은 문화재수리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기술자 1인이 동시에 배치될 수 있는 현장의 개수를 3개로 정하고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5개까지 허용하고 있음. 그러나 발주자 및 계약방법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등 기준이 복잡하고, 운영상 혼란이 있어 예외사유를 정비하고 문화재수리 여건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00.00. ~00.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2023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정비건임.

- 규제 신설·폐지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3항 단서 중 “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문화재수리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”를 “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인 문화재수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8조(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) ①·② (생략)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3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(문화재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)에 배치할 수 있다. 다만,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문화재수리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를 포함	제18조(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문화재수리</u> <u>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인 문화재수리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하는 경우에는 5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(문화재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)에 배치할 수 있다. ④ ~ ⑦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④ ~ ⑦ (현행과 같음)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재청 수리기술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865